

「알루미늄선 구조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개방검사 주기 완화(안 제3조제2항, 제4조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알루미늄은 특성(산화피막)으로 인해 별도의 방식조치가 필요 없으나, 방식조치를 할 경우 구조부재의 치수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삭제

나. 개정 내용

- 선체 구조부재의 치수를 경감하는 근거 중 방식조치를 삭제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프로펠러를 보조하는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여 안전을 강화하고,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한 민원인들의 편의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공포한 날부터 시행